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1월 17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)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, 기존의 부천중부경찰서, 부천남부 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,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,

○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“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·부천중부경찰서장”을 “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, 부천원미경찰서장, 부천소사경찰서장, 부천오정경찰서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3항).

나.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변경함(안 제2조제4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③ 위원 중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, 부천원미경찰서장, 부천소사경찰서장, 부천오정경찰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”을 “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(교육지원청・경찰서・지방고용노동지청 등)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(교육청, 경찰서, 지방노동 관서 등)”을 “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”를 각각 “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실무위원회 설치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천시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실무위원은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

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사항에 관하여는”을 “사항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